제조물책임법의 내용과 사례

전기용품을 연구하는 모임(전연모)에서는 지난 4월 23일(19 : 00) 양재동에 위치한 스포타임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유러의 대표변호사인 하태웅 박사를 모시고 "제조물책임법의 내용과 사례"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다음은 이날 강연의 자료를 발췌하오니 전기용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조있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주 -

글 : 하태웅 변호사 /법학박사
법무법인 유러 대표변호사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배경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 함은 결함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이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입법에 관해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소비자보호라는 양자의 이익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 동법이 2000. 1월 제정되었다.

주요국의 입법동향

제조물책임의 법리는 19세기초 영·미의 산업혁명 결과 제조물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제기되어 발전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는 판례에 의하여 제조물책임제도가 확립되었는데, 1963년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에서 엄격책임(무과실책임)을 채택한 이후 1970년대 각 주정부가 채택함으로써 오늘날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의 원칙이 되었다.

EC의 경우 1968년 제조물책임의 통일입법을 위한 검토를 시작하여 1985년 7월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이 채택되었으며, EC 각국은 이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5년 4월 국민생활심의회에서 제조물책임의 무과실책임 요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1994년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199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내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가.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동법제2조)

①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② 완제품, 부품, 원재료를 불문하고 동산이면 대상
③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④ 부동산 및 미가공농수산물 제외

나. 제조물책임부담자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공급업자까지 포함된다.

①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② 제조물에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등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③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 다만, 상당한 기간내에 피해자에게 제조업자 또는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려주면 면책

다. 결함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에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한다.

라. 손해배상의 대상 및 범위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는 제조업자등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인적손해인 생명, 신체는 물론 물적 손해인 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1항).

마. 면책사유

동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의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게 된다.

다만, 제조물의 결함을 사전에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손해발생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때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및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④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바. 책임기간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때로부터 3년간(소멸시효)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내(제척기간)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사. 민법의 적용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판례의 검토

가. 한국의 판례

1) 제조물책임인정사례

① TV 暴發事故와 製造物責任 認定 판례 1 (속초지원 94가합 131)

② 冷藏庫 사고와 製造 및 設計상 缺陷

③ 변압변류기 폭발 사건(대법원 1992. 11. 24. 선고,92다 18139판결)

④ 삼성전자 칼라TV 화재사건 (대법원 2000. 2. 25.선고,98다 15934판결)

2) 제조물책임부인사례

① 상품적합성 결여손해에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부인한 판례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 26593판결)

② 製造物責任訴訟에 대한 外國法院의 裁判管轄權을 否認한 판례 (대법원 93다 39607, 1995. 11. 21 선고)

나. 미국의 판례

① GM 소형트럭 소송 사건

② Firestone 타이어 소송